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15

발의연월일: 2024. 8. 28.

발 의 자:권칠승·김교흥·김태년

김태선 · 송옥주 · 한민수

임호선 · 소병훈 · 위성곤

이건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의 적용을받아 법원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송촉진법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한 자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강요한 자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딥페이크 등을 활용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 박한 자가 불법촬영을 한 자에 비해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도 덜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을 추가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 을 입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법률 제 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15조"를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로 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 제25조(배상명령) ① |
|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 | |
| 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 |
|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 | |
| 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 |
|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 | |
| 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 | |
| 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 | |
| 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 | |
| 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 | |
| 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2 |
|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 | |
| 14조까지, <u>제15조</u> (제3조부터 | <u>제14조의2, 제14</u> |
|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 | <u>조의3, 제15조</u> |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 | |
| 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 |
| 제14조에 규정된 죄 | |
| |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